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 등〉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28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로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	3
2.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7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7.
3. 회부연월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
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1. 공로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

개정안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생략)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u>2년</u>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u>6개월</u> ----- -----.

☐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¹⁾에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공로금을 받고자 하는 공로자 및 유족은 현행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2년 이내(2023년 10월 16일²⁾까지)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그 신청기한은 도과하였음.³⁾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4,820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2,956건에 대해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로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258.7억원을 지급하였음.

[공로금 신청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건 수	1,897	1,423	1,500	4,820

* 자료: 국방부

□ 그런데 국방부에 따르면 소속·임무의 특성상 정확한 인적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⁴⁾, 2021년 4월 현행법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대상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당초 신청기한이었던 2023년 10월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법 제정 당시 공로금 지급 목표 인원이었던 4,542명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⁵⁾

2) 2023년 10월 15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까지 신청 접수함.

3) 국방부는 신청기한 도과이후 신청 문의가 접수된 경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 시행 후 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4)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활동한 비정규군은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한국군으로 전환되어 군번이 확인되는 인원만 약 1.4만명에 이르는 상황임.

구체적인 추산 내역을 보면, 현재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수가 2,956건이고, 심의 대기 인원 중 보상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약 1,345건으로 이를 합치면 4,301건임.

한편, 지난 2년간 신청기간 동안 월 평균 신청 건수가 201건인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의 신청기한 연장 사례를 보면 신청 연장 이후에는 기존 대비 1/3 수준의 신청이 추가됐다는 점을 감안할때, 월 기준 약 65건 정도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390건(=월 65건 × 6개월)에 최근 2년간 신청 대비 보상결정률 89%를 곱하면 350건 정도가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즉, 이미 신청한 사람 중 공로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4,301건이며,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추가로 350건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바 약 4,600건에 대해 공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법 제정 당시 목표치인 4,542명에 이르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에서도 신청 기한을 수차례 연장⁶⁾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처럼 유사 법령에서도 신청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고, 국방부도 신청 기한 추가 연장에 따른 행정소요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시 곧바로 신청 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법 제정당시 목표 인원 추산 등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5차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차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3차례 기간 연장.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방부 내에 담당 부서가 신청 기한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민원 안내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국방부는 유사 법령에서도 대부분 신청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고, 국가가 공로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기획재정부는 예상 보상인원 대비 실제 신청인원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개정안은 공로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단체 등에 대하여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⁷⁾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공로자 및 그 유족은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유격군총연합회 등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7)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 현행법은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유격군총연합회’ 등 관련단체는 연간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국방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음.

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의 95%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상기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법인으로 하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임.

특히,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6·25 전쟁 기간 국군 소속의 첩보 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와

달리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국군이 아닌 비정규군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인 ‘6·25 참전 유공자회’의 지부가 아닌 ‘직할회’로 분류되어 독자적으로 회원관리, 추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는바, 2021년 동 법이 제정되어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를 인정한 만큼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질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고령화 등에 따라 전우회원 수가 급감⁸⁾하여 회비 모금이 원활하지 않은 반면, 법 시행 이후 공로자 유족 찾기, 비정규군 보상신청 안내 등 운영 사무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의 6·25 참전 유공자회 지부에 대한 운영비 지급액수를 참고할 경우, 연간 운영비 지원은 약 6,000만원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법체계 상으로는 동 법이 아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직할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8) 국방부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00년대에 최대 6,000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에 3,000~1,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현재는 500명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음.

다른 직할회(전시사관학교 전우회, 다부동 전투구국용사회, 갑종 전우회, 여군회, 참전경찰유공자회 등)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 대상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위 직할회들의 경우 군인 또는 경찰로 구성되어 있어 非군인 출신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획재정부는 유사 사례의 경우 단체설립의 근거는 별도 법률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는 점,⁹⁾ 국방부에 의한 별도 지원 시 참전단체간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인 참전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도의 단체설립 관련 법률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국가보훈부가 아닌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점¹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9) 예를 들어,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공로자 보상은 국방부 소관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설립 및 지원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0) 남북피해자의 경우 통일부 소관의 법률인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련 단체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 (법 제정 당시 보상대상 추계) 총 4,542명 (공로자 3,256명, 유족 1,286명)
 - 공로자 3,256명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유격군으로 등록된 사람('20년 기준)
 - 유족 1,286명 : $10,634\text{명}[13,890\text{명}(\text{총원})^* - 3,256\text{명}(\text{공로자 본인})] \times 12.1\%$
6·25 전쟁 당시 군 첩보부대 운용인원 3,862명 중 유족보상 인원 : 467명(12.1%)
 - * 13,890명 : 6·25 전쟁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어 군번을 부여받은 자 등 객관적 자료보유 인원

- (보상현황) 총 2,596건 인용 결정(신청 대비 지급 결정률 89%, '23. 11. 15. 기준)
 - 공로금 지급 결정금액은 총 287.9억 원(당초 보상 목표 454.2억원 대비 63.3% 수준)

구분	신청	심의 완료 (66%)			심의 대기 (34%)				각하
		소계	인용	기각	소계	조사 완료	조사 진행	조사 대기	
계 (건)	4,820	3,297	2,956 (89%)	341 (11%)	1,500	72	862	563	23

- (개정 시 비용추계) 법 제정 시 목표 인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350여분 넘는 공로자에게 보상 가능
- 신청기한 未연장 시와 대비할 때는 34.2억 원 증가

구분	법 제정 시 목표	현행 법 시행 시	신청기한 연장(개정) 시
금액 (억원)	454.2	420.6 (보상인원 대비 결정금액 97.8%)	454.8 (보상인원 대비 결정금액 97.8%)
비고	보상인원 4,542명 (1인당 1천만 원)	보상인원 4,301명 (既보상 2,956명 + 향후예상 1,345명)	보상인원 4,651명 (현 시행인원 4,301명+추가 350명)* 추가 신청 390여 명, ↓ 보상결정률 89%)

*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신청기간 연장 후 월 평균 신청 65건 등 고려

* 자료: 국방부